

2011년 8월
경영학석사 학위논문

베트남 기업의 비정상적 이익보고수치와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bnormal Income Numbers and Earnings
Managements in Vietnam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전공

르우 티 응구엣 앵

베트남 기업의 비정상적 이익보고수치와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bnormal Income Numbers and Earnings
Managements in Vietnam

2011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르우 티 응구엣 앵

베트남 기업의 비정상적 이익보고수치와
이익관리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김 문 태

이 논문을 경영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회 계 학 과

르우 티 응구엣 앵

르우 티 응구엣 앵의 경영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한다.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승제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길영 _____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문태 _____ (인)

2011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3

제2장 베트남 자본시장의개방과 회계정책

4

제1절 베트남 자본시장의 개방	4
------------------------	---

제2절 베트남 회계기준	7
--------------------	---

1. 회계기준의 특징	7
-------------------	---

1.1 회계기준의 특징	7
--------------------	---

1) 계정과목과 자본거래의 단순	7
-------------------------	---

2) 보조금 회계가 복잡하다.	7
-----------------------	---

3) 표준양식과 기본재무제표	7
-----------------------	---

4) 경리장 자격증과 전결 규정	8
-------------------------	---

1.2 회계제도의 요약	8
--------------------	---

1) 매출인식과 비용인식	8
---------------------	---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8
----------------------	---

3) 총당금계정과 퇴직급여총당금	8
-------------------------	---

4) 이연 법인세와 자본금	9
----------------------	---

2. 한국과 베트남 회계제도의 차이점	9
----------------------------	---

2.1 계정과목	9
----------------	---

2.2 기본재무제표	10
------------------	----

2.3 재무제표의 공시	10
--------------------	----

2.4 한국과 베트남 회계처리 세무규정 비교	10
--------------------------------	----

1)토지관리	10
2)건물 및 기계장치 등	10
3)기타 무형자산	11
4)이연법인세 회계	11
5)퇴직급여충당금	12
6)기타 베트남 회계관련 사항	12
3. 베트남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비교	12
제3장 선행연구의 고찰	17
제1절 이익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7
1. 이익관리의 유형	18
2. 이익관리의 대상과 이익관리 추정에 관한 연구	23
제2절 보고이익 수치의 비정성적 분포에 관한 연구	26
제4장 실증분석	29
제1절 연구의 설계	29
제2절 가설 검증모형의 설계	33
제3절 표본선정	33
제4절 실증분석 결과	34
1. 기술통계량	34
2. 상관 분석	35
3. 평가차이분석	36
4. 회귀분석	37
제5장 요약 및 결론	42
참고문헌	44

< 표 목 차 >

<표 3-1> 이익 관리의 선행연구	23
<표 4-1> 기술통계량 (n=414)	34
<표 4-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n=414)	35
<표 4-3> 평균차이분석 (n=414)	36
<표 4-4> 다중회귀분석	37

ABSTRACT

A Study on Abnormal Income Numbers and Earnings Managements in Vietnam

LUU THI NGUYET ANH

Advisor : Prof. Moon-Tae Kim, Ph.D.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Earnings management is exercised with various intentions (Healy, 1985; Trueman and Titman, 1988; Jones, 1991; Scholes et al., 1992; Defond and Jiambalvo, 1994). Typically, previous studies have showed that earnings are managed in order to meet certain targets or thresholds. Those targets or thresholds are aimed at: (1) reporting positive earnings; (2) sustaining recent performances (i.e. report a higher earnings figure than previous year); (3) meeting investors' expectations.

This research indicates the method which demonstrates the highly existent possibility from the report about the net profit of the Vietnam enterprises. In the report on the profit, from the second number position 0, 1, 2, etc, the low number position could be observed an unusual occurrence frequency. The most commonly ratiocination is that, if the number values of the profit report is normal and not to be fabricated, then the number which is located secondly in the place will be recorded with probability of 1/10 with the fact. This was already confirmed in previous studies, and the studies indicated that the number values of the profit report from the minimum experience are expected according

to the Benford's law.

However, if the managers use the rounding-up method for adjustment of profits before reporting the profits, that is to make the number becomes bigger and the second number smaller. For example, in order to report 9,9 billions ₩ to be 10 billions ₩. Herein, the number 9 at second number position was rounded up. Thus, the first number position (the front number) becomes 1 and the second number position (the rear number) becomes 0. Therefore, at the second number position from 0, 1, 2, etc... the low-number of the value is equal 1/10 which is equivalent to the profit bearing expected probability. Moreover, by using statistic method and high level of the exclusion in Benford's law probabilities, the fabrication of the number values in the profit report could be observed (Kim Moon Tae . Wee Joon Bok . 2007).

However, the enhancement of the profit is not always applied in all situations. Typically, the tax curtailment policy is concretized by strategy in the decrease of profit (Park Choon Lae and Kim Seong Min, 1995 ; Paek Won Soon and Choi Kwan, 1999; Park Chong Il and Kim Kyong Ho, 2002; Wee Joon Bok and Kim Moon Tae, 2007). 747 firms were analyzed from 1999 to 2002 using logistic model and linear regression model.

At the present, many leading companies in Vietnam are being applied different preferential duties. In some enterprise, the profit may be decreased, but in other enterprises, it could be increased either by compensation or sustaining a cumulative profit depending on the way which the companies may select to apply.

Our data obtained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Carslaw (1988), Thomas (1989) and Kim and Wee (2007). And it is clearly suggested that the Vietnam firms are apt to decrease their earnings, because it may be avoid the high tax and or the wage burden.

Key words: second left digit numbers, rounding-up, earnings management, discretionary accruals, Benford' s law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베트남 기업의 이익보고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익은 기업 영업활동의 요약으로써 추가형성, 자금조달, 조제전략, 임금현상에 주된 기본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이익수치는 기업 경영자 자신의 사적 만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욕구와 부합되어야 한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기업성고가 회계방법의 전략적 선택을 통하여 이익으로 보고된다는 점을 밝혀왔다. 그러나 오랜 역사동안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해 온 베트남 기업의 보고이익 행태를 분석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베트남의 경제체제는 오랫동안 대외 의존적 경향을 유지해왔는데, 이는 베트남 통일 전후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대변혁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에는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에 의존했던 반면, 이후에는 아시아, 미국,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에 의존해오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주목할 것은 베트남이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인 1986년 도이 모이(Đổi mới)정책을 통해 개혁·개방을 개시함으로써,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대해 시기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가졌다는 점이다(김성철, 2009).

과거 미국은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의 베트남 지원과 미국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차단하였으나, 1991년 캄보디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서 완화되기 시작해 1994년 전면해제 됨으로써 30년에 걸친 적대관계가 해소되기에 이르렀다. 베트남은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인도차이나반도 전략과 궤를 같이 하면서 1987년 외국인투자법을 제정하여 사회주의권은 물론이고 자본주의권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에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에 가입하였으며,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확대,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개시, 개별국가 및 국제기구의 ODA 지원 등 다양한 개방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¹⁾.

1) 2010년 베트남 통계청에 의하면, 올해 1~8월 동안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인가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베트남의 개방화와 개혁화의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특히 회계투명성을 담보하기는 어렵다는 평가이다²⁾. 또한, GDP의 상당부분이 지하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 '비엠키에우(viet kieu)'로 불리는 베트남 해외동포 자금도 지하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공식 송금액만 연간 8조원에 달하는 이들 자금은 부동산과 금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은행은 최근 "베트남의 연간 지하경제 규모는 GDP의 15.6%로 5년 전(15%)보다 조금 확대됐다"는 자료를 보고하였으나, 이코노미스트인 레 당 조아임(Doanh)에 의하면, 지하경제의 규모는 최소한 GDP의 30%는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³⁾.

이러한 시의적 상황에서 베트남 기업의 성과보고 특징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12.3% 감소된 약 115억 7700만 달러이다. 이 중 신규 인가건수는 658건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0% 감소했지만, 인가액은 41% 증가한 107억 9000만 달러, 증액 투자는 143건으로, 인가액은 7억 8700만 달러이며, 1~8월 FDI 실행액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73억 달러이다. 국별 투자액은 네델란드가 22억 2020만 달러, 미국 17억 9220만 달러, 한국 16억 9380만 달러, 일본의 14억 4760만 달러 순으로 보고되었다. 투자지역은 동남부 바리어-붕따우성이 22억 3330만 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북부 쩡닌(Quang Ninh)성의 21억 4700만 달러였다 출처 : Thong cuc thong ke 9.7

2) 신문기사(2011년 1월 29일, 매일경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베트남 공기업, 작년 회계부정 8천억원 규모>. “지난해 베트남의 주요 공기업들에서 7억600만달러(한화 약 8천억원)의 회계 부정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간신문 뚩오이제는 29일 감사원 소식통의 말을 빌려 지난 한해 조선공사(비나신), 전력공사(EVN), 석탄광물공사(비나코민) 등 주요 공기업들에서 132건, 7억600만달러 규모의 회계 부정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특히 비나신의 경우 밝혀진 부채 규모만 45억달러인데다 지난해 말 6억달러 외채의 1차 상환분 6천만달러에 대한 지불유예(디폴트)를 선언한 것과 관련, 집중 감사를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비나신의 회계 부정 규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회계 부정 사례 중에는 베트남 최초의 정유소인 중부 쩡응아이성 중꾸엣정유소 건설사업과 남부 호찌민시의 투티엠대교 건설사업도 포함되어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사업 규모가 큰 비나신과 EVN은 올해도 단위 사업장별로 집중.정밀감사를 받을 것이라면서, 지난해 회계 부정에 대한 종합감사보고서와 이에 대한 조치는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현지 사정에 밝은 해외 진출업체 관계자는 국영기업의 회계 부정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이는 책임의식 결여 및 범죄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국가경쟁력과 국제신인도 추락의 또 다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3) 이에 대한 신문기사(조선일보, 2008. 9. 20)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중략)...베트남에선 이른바 '보이지 않는 돈'이 움직이는 '지하 경제'가 경제를 쥐락펴락하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정부의 엄격한 외환관리 규제를 피해 암시장 거래가 성행한다. 불룸버그통계에 잡히지 않는 베트남 지하 경제 규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베트남의 금괴(gold bar) 수입 실적. 지난 2001년 이후 베트남에 소매용으로 들어온 금괴는 약 600t. 그러나, 베트남 시중은행에 예치된 금괴는 고작 40t에 불과하다. 현지 일간지 뚩오이제는 "나머지 500여t, 시가로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는 장롱 속에 숨겨져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다. 베트남인들의 뿌리깊은 은행 불신으로 민간 저축률이 10%대에 그쳐 "음지에서 떠도는 현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베트남 지하 경제의 상당 부분은 공무원과 기업인 사이에 오가는 '뒷돈' 문화가 지탱하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평가한 지난해 베트남 부패지수는 180개국 중 128위. 호찌민의 모 한국계 기업 임원은 "공무원에게 주는 뒷돈은 인사치레가 아닌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털어놨다.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현금 거래 문화도 지하 경제 확대를 부추기고 있다. 베트남에선 웬만한 식당이나 상점에서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다. 지난 2~3년 동안 고가(高價) 아파트 분양이 줄을 이었던 호찌민에선 '검은 돈'이 시장의 큰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본다. 본 연구는 베트남 기업의 보고이익의 둘째자리에 오는 0, 1, 2 등 낮은 자리 숫자와 이익관리(earnings management)의 기초인 총발생액(total accruals)의 설명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만일, 이들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설명관계를 가진다면, 둘째자리에 오는 0, 1, 2 등 낮은 자리숫자는 이익보고 이전에 이익의 상향조정을 의도하여 '절상(round-up)' 되었을 개연성을 내포할 것이다. 반대로 이들의 관계가 유의한 음(-)의 설명관계를 가진다면, 둘째자리에 오는 0, 1, 2 등 낮은 자리숫자는 이익보고 이전에 이익의 하향조정 혹은 이익의 상향조정 억제를 의도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위준복과 김문태, 2005).

본 연구는 보고이익의 숫자행태와 발생액 사이의 관련성을 통하여 베트남 기업들이 이익을 상향조정 혹은 하향조정 하는지를 간접적으로 검증하여, 베트남 기업들의 이익관리 의도(은행에서의 유리한 자금차입 조건, 세무전략)를 유추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귀납적 접근방법으로서 베트남 자본시장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베트남 증권시장 68호 (<http://www.cophieu68.com>)에서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분석방법으로는 상관분석, 차이분석, 다중회귀분석(선형회귀분석, 로짓분석)을 실행하였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베트남의 자본시장과 회계정책을 개괄하고, 3장에서는 연구 논거 확보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4장에서는 가설 설정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모형 설계, 표본의 구성,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5장의 요약 및 결론으로 구성되었다.

제2장 베트남 자본시장의 개방과 회계정책

제1절 베트남 자본시장의 개방⁴⁾

대외 경제개방의 확대로 베트남의 대내 개혁은 보다 가속화되었다. FDI, 국제금융기구의 지원, 공적개발원조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등 자본수입에 따른 경제체계의 구조적 전환이 요구되었다. 가격자유화, 재정과 금융의 분리, 국영기업의 개혁 등이 그것이다. 가격자유화는 베트남 개혁정책 중 가장 선행되는 것으로서,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 이전부터 추진되었던 핵심 정책이었다. 가격자유화는 거시경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적자와 물가급등을 막는데 초점을 두었다. 재정 및 금융개혁은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지원의 중요한 요구조건이다. 실제로 1993년 이후 재정, 금융, 외환정책의 정상화 합리화를 조건으로 3-5년의 중기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바 있다. 베트남의 재정 및 금융개혁의 핵심은 먼저 재정과 금융을 분리하는 것으로서, 세출면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고, 국영기업에 대한 지원을 금융의 자율에 맡김으로써 분권적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데 있다. 국영기업 개혁은 국제금융기구의 요구사항인 동시에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참여에 따른 대내적 조치사항의 일환이다⁵⁾. 베트남의 국영기업 개혁은 급진적 민영화를 추구한 동구와 달리, 국영기업의 경영자율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리스트럭처링(restrucuring)을 통해 만성적 적자상태인 국영기업을 정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마디로 베트남에서는 개방과 개혁 간의 상승작용이 밀접

4) 김성철(2009)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5) ASEAN Free Trade Area (AFTA) is a trade bloc agreement by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supporting local manufacturing in all ASEAN countries. The AFTA agreement was signed on 28 January 1992 in Singapore. When the AFTA agreement was originally signed, ASEAN had six members, namely, Brunei, Indonesia, Malaysia, Philippines, Singapore and Thailand. Vietnam joined in 1995, Laos and Myanmar in 1997 and Cambodia in 1999. AFTA now comprises the ten countries of ASEAN. All the four latecomers were required to sign the AFTA agreement in order to join ASEAN, but were given longer time frames in which to meet AFTA's tariff reduction obligations.

하게 연결되어왔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지도부의 실용주의적 인식과 함께 경제 체계의 대외 의존적 속성으로부터 크게 기인하였다.

그러나 1986년 제6차 베트남 공산당 대회에서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한 도이 모이 정책을 택하여 경제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의 길이 열림에 따라 급속한 경제성장의 기회를 맞았다. 또한 베트남은 ASEAN 가입으로 역내 경제권에 편입되어 시장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다.

1987년 10월에 개최된 CMEA 43차 임시회의에서 소련 및 동구국가들과 베트남, 쿠바, 몽고 사이에 1991년부터 2005년까지의 장기 상호협력 프로그램을 채택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저발전 사회주의국가들의 수준을 소련 및 동구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것이었지만, 그 방식은 기존과 달랐는바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에는 몇 가지의 조건이 따라붙었다. 첫째로 대규모 원조는 수혜국이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전까지 제공할 수 없으며, 둘째로 원조가 무차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잠재성을 고려한 것 이어야 하며, 셋째로 중앙집중식 경제의 비효율성과 효과분산을 종식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었다.

미국 경제제재의 의도 전환은 베트남의 대내외적 요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경제제재의 효과를 고려한 현실적인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1988년 베트남은 캄보디아로부터 철군할 것이라고 밝혔고 실제로 철군을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이로써 외국인 투자, 기술이전, 외국차관 등을 기대하였으나, 미국의 반응은 순응적이지만은 않았다. 미국은 철수에 대한 국제적 입증 결여를 이유로 IMF의 베트남 경제복구 원 조 제공에 제동을 걸고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의 베트남 금융지원을 봉쇄하였다. 1994년 2월 미 클린턴 대통령은 대 베트남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를 발표하고, 1995년 8월 정식으로 베트남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였다. 미·베트남 무역협정 체결 이후 남은 중요한 현안은 베트남의 WTO 가입이라고 할 수 있다. 베트남은 이미 ASEAN 가입과 함께 AFTA 하의 역내 자유무역의 흐름에 편승하였고, 마침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사실상 WTO의 전제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베트남은 상당한 규모의 지하경제가 존재하고, 적지 않은 국내저축이 제도 금융권 밖에 묻혀있기 때문에 공업화를 위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외자도입과 투자유치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때문에 베트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종 산업공단과 수출가공공단을 조성하고 투자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장려시책을 살펴보자. 베트남 투자의 경우 장려업종은 특별투자 장려분야, 일반투자 장려분야로 구분된다. 특별투자 장려분야는 16개의 분야가 있으며 생산 제품의 80% 이상을 수출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일반투자 장려분야는 33개의 일반 투자 장려 프로젝트로 나뉜다. 100% 단독투자의 경우 법정자본금은 원칙적으로 총 투자자본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한편, 베트남과 한국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과 베트남은 21세기 동반자 관계다. 매년 50만 명의 양국 국민이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고 있으며, 양국의 무역규모는 2008년 말을 기준으로 98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 베트남 투자는 누적규모로 건수가 2000건을 넘었으며, 규모로는 158억 달러로 전체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4위이다. 한국의 베트남 투자기업은 1680여개에 이르며, 35만 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지난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를 시작으로 양국 간 교역은 급속히 증가했다.

1990년대 동안 연평균 19%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온 베트남이 향후 유망한 신흥시장으로 급부상하면서 한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진출이 이어졌다. 이후 교역규모가 2001년 22.5%,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33.3%, 50.5%씩 증가했다. 2008년에는 무려 40%에 육박하는 성장세를 보이는 등 향후 전망은 매우 밝다. 2009년 상반기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과 베트남의 교역은 2007년 6월 29일 양국간 FTA 발효 이후 2년간 교역액은 179억 달러로 발효 전 2년간 107억 달러에 비해 76%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체 교역액 증가율 20%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양국 간 FTA 발효 이후 무역교류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한국의 대 베트남 무역수지도 증가를 보였다. 발효 1년 전에는 34억 달러 흑자였으나 발효 후 1년간 60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발효 후 2년차에는 경제위기 등의 여파로 44억 달러에 그쳤지만 발효 전 보다는 증가한 수치다.

제2절 베트남의 회계기준⁶⁾

1. 회계기준의 특징

베트남은 1990년 이후 경제개방과 더불어 회계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최근 많은 회계 관련 규정들이 발표되었다. 현재 베트남 회계기준과 관련한 주요 법은 회계법, 베트남회계시스템, 회계기준서 및 다양한 예규로 구성되어 있다.

1.1 회계기준의 특징

1) 계정과목과 자본거래의 단순

현재까지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작고, 거래 형태가 단순하여, 복잡한 거래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 사용되는 계정과목이 단순하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 보다는 유한회사, 국영회사의 형태가 많기 때문에, 자본거래에 대한 내용이 매우 단순하다. 적립금 회계가 없으므로 외국인 회사의 경우 자본금 및 잉여금 계정과목이 자본회계처리의 전부이다.

2) 보조금 회계가 복잡하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므로, 회사들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으며, 보조금의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 보조금과 관련된 회계처리 규정이 많다. 그러나 외국인 회사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3) 표준양식과 기본재무제표

회계 관련 표준회계처리지침이 정부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으며, 규격화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계정과목별로 코드(code)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용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므로 회계처리에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계정과목 보다는 코드번호가 더 일반적으로 통용된다. 그리고 베트남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으며, 부가

⁶⁾ 조준제(2009)의 연구에서 발췌 정리하였다.

가치세변동표와 같은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처럼 부가되어 표시된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비밀문서로 간주하고 공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사보고서는 투자허가기관, 세무서 및 통계청에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4) 경리장 자격증과 전결 규정

베트남의 경우 경리부장은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경리부장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베트남인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 관련 업무종사 및 교육기관 이수, 시험합격을 하여야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거주기간, 자격증 및 경험과 관련한 증빙 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서에는 경리부장과 사장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로써의 공신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러나 내부적인 규정에 의해서 전결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1.2 회계제도의 요약

1) 매출인식과 비용인식

일반적인 제품판매수익, 할부판매수익, 용역수익 및 공사수익과 관련하여 매출인식 방법은 한국과 동일하나, 아파트 등의 분양공사와 관련한 수익인식기준은 한국과 같이 완성률에 의하여 인식하는 방법은 도입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리고 비용의 인식은 한국과 동일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증빙이 없는 비용은 회계처리를 하지 못한다.

2)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유형자산은 한국과 같다. 그러나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는 무형자산으로서 토지사용권으로 표기한다. 이것은 토지 국유화를 표방하는 정치 특성상, 토지 소유권의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에 도입되었다.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비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3) 총당금계정과 퇴직급여총당금

베트남에도 각종 총당금 규정이 있어 한국과 특별한 차이는 없다. 다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총당금 설정 관련규정에 의하여 총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퇴직급여총당금은 1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총당금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회사부담 분 사회보장기금은 급여의 15%로 전액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된다.

4) 이연 법인세와 자본금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를 발표하였으며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베트남에는 이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다. 그리고 납입자본금은 회사의 출자금이고, 실제 납입금액만 표시된다. 베트남에서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납입자본금의 확인을 위해서는 투자청에 보고하는 투자완료보고서 또는 감사받은 재무제표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권자본금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예상금액을 투자청에 신고한 투자허가서 상 투자예정금액이다. 외국인 회사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한국과 베트남 회계제도의 차이점⁷⁾

2.1 계정과목

- 베트남은 모든 기업이 적용해야 할 계정과목 및 Code를 지정하고 있음.
- 위 계정과목을 기본으로 해 기업은 sub-account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예시>

Account	Sub Account	Account Name
		Current assets
111		Cash on hand
	1111	Vietnamese currency
	1112	Foreign currency

⁷⁾ 자료의 출처: Deloitte(호치민) 최준회계사, 무역관 자체 조사(<http://blog.daum.net/jeri1960/17297613>)

	1113	Gold and others
112		Cash in bank
	1121	Vietnamese currency
	1122	Foreign currency
	1123	Gold and others

-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투자기업은 회계시스템 설계 시 본사 보고 목적의 계정과목을 운영하면서, 이를 베트남회계시스템(VAS)에 규정된 계정과목과 Mapping해 운영하는 방식을 취함.

2.2 기본재무제표

- 한국은 기본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및 현금흐름표가 들어가나, 베트남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없으며, 부가가치세 변동표와 같은 내용이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처럼 추가돼 있음.

2.3 재무제표의 공시

- 한국의 경우 외감업체인 경우 재무제표가 공시되지만, 베트남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비밀문서로 간주하고 공시되지 않음. 따라서, 경쟁업체 또는 기타 업체의 재무제표를 입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다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 이용자를 위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음.

2.4 한국과 베트남 회계처리 세부규정 비교

1) 토지 관련

구분	한국	베트남
계정과목	유형자산	무형자산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정지비, 등록비 등	좌동
감가상각	없음	정액법
내용연수	없음	사용가능기간

- 베트남은 토지가 국가소유이므로 토지라는 유형계정과목 대신에 무형자산으로의 토지사용권으로 기표함. 즉, 토지소유권 인정을 부인하고 사용권만을 인정

2) 건물 및 기계장치 등

구분	한국	베트남
취득원가	취득금액 및 관련비용	좌동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및 기타 합리적 방법	정액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생산량비례법 및 정류법 (정액법의 2배 초과 안 됨)
내용연수 범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법인세 법상규정을 따름)	경제적 내용연수(일반적으로 감가상각 법상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신고)
자본적 지출	100만 원 기준	1000만 동 (약 650달러)

3) 기타 무형자산

- 기타 무형자산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가 2004년 중 도입됐으며, 개발비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음. 창업비 및 개업비는 특별하게 향후 수익창출활동 금액과 명확하게 연관관계가 있지 않는 한 한국과 동일하게 대부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창업비의 경우, 3년의 기간에 걸쳐 비용 처리할 수 있음.

4) 이연법인세 회계

- 베트남은 2005년부터 이연법인세 기준서를 발표
-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이연법인세 적용의 예외규정이 있으나, 베트남은 없음.

5) 퇴직급여충당금

- 한국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나, 1년에 0.5개월의 급여만을 충당금으로 설정. 한편, 회사가 부담하는 사회보장세(급여의 15%)는 한국과 동일하게 전액 당기 비용으로 기표되며, 퇴직보험예치금과 같은 제도는 없음.

6) 기타 베트남 회계관련 사항

○ 경리장의 역할 및 자격 요건

-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인정한 자격증인 Chief Account 자격을 보유한 경리장을 채용해, 세무서에 등록해야 함.
- 경리장의 주요 역할은 회계 및 세무에 관해 대내외적으로 권한 및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
- 경리장은 회계전표 및 세무신고서, 감사보고서 등에 대표이사와 공동 서명함.
- 경리장의 요건은 내국인의 경우, 일정기간 회계관련 업무 종사 및 교육기관이수 및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 외국에서 인정할 수 있는 회계 등 관련 자격증을 구비해야 하며,
 - 베트남에서 1년 이상 회계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 최소한 베트남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음.

○ 베트남의 회계감사

- 한국은 자산규모 70억 이상만 외부감사를 받으나, 베트남에 있는 모든 외국인투자 회사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 모든 외국인 투자기업은 회계감사를 받은 후, 감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관련 기관(투자승인기관, 세무서, 통계청)에 제출해야 함.

베트남 회계규정의 경우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나, 경제 사회적인 여건상 일부 내용의 경우 변형된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3. 베트남 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비교⁸⁾

베트남은 1990년 이후 경제개방과 더불어 회계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며, 최근 많은 회계관련 규정들이 발표되었다. 현재 베트남 회계기준과 관련한 주요 법령은 Accounting Law(회계법), Vietnam Accounting System(베트남회계시스템), 베트남회계시스템의 일부 수정사항에 관한 시행령 Circular 5, Vietnam Accounting Standard(회계기준서) 및 다양한 예규(Official Letter)로 구성되어 있다.

베트남의 회계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기본적으로 도입하는 추세이므로 이미 제정 공표된 베트남 회계기준서의 경우 IFRS와 큰 차이가 없으며, 제정되지 않은 영역도 장기간으로 점차 발표될 예정이다.

베트남의 현행 회계관련 법률 및 규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명칭		공표일
회계법	Law on accounting 3/2003/QH11		2003/6/17
회계법 의정서	Decree 129/2004/ND/CP		2004/5/31
회계법 결정문	Decision 149/2001/QĐ-TTC- 베트남 회계기준서 4개	VAS 2: 재고자산 VAS 3: 유형자산 VAS 4: 무형자산 VAS 14: 수익	2001/12/31
	Decision 165/2002/QĐ-TTC- 베트남 회계기준서 6개	VAS 1: 개념체계 VAS 6: 리스 VAS10: 환율변동의 회계 처리 VAS 15: 공사계약 VAS 16: 차입원가 VAS 24: 현금흐름표	2002/12/31
	Decision 234/2003/QĐ-TTC- 베트남 회계기준서 6개	VAS 5: 투자자산 VAS 7: 특정지분투자 VAS 8: 조인트벤처 투자 지분 VAS 21: 재무제표의 표시	2003/12/30

⁸⁾ 참조 : <http://www.deloitte.com/>

		VAS 25: 결합재무제표와 종속회사 투자 VAS 26: 특수관계자 공시	
	Decision 12/2004/QD-TTC- 베트남 회계기준서 6개	VAS 17: (법인) 소득세 VAS 22: 은행등 유사금융기관의 재무제표의 공시 VAS 23: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사격 VAS27: 중간재무보고 VAS 28: 사업부문보고 VAS 29: 회계원칙, 회계추정의 변경, 회계오류	2005/2/15
	Decision 59/2004/ QDBTC_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의 경리장(Chief accountant) 대리외 관련된 자격 등		2004/7/9
회계법 시행규칙	Circular 122/2004/ TT-BTC_ 외국인투자법인 적용 Circular 89/2002/TT-BTC_ 회계기준서 시행규칙 Circular 105/2003/TT-BTC_ 회계기준서 시행규칙 Circular 23/2005/TT-BTC_ 회계기준서 시행규칙		2004/12/22 2002/10/9 2003/4/21 2005/3/30
벌과 규정	Decree 185/2004/ND/CP Circular 120/2004/TT-BTC		2004/11/4 2004/12/15

베트남의 현행 회계규정 상 언급되지 않은 회계기준 영역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베트남 회계법 상 베트남 회계규정 상 미비한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아래의 규정도 베트남에서 준용하여 회계처리에 적용할 수 있다.

번호	내용
IFRS 2	주식보상
IFRS 5	중단사업과 매각예정 투자자산
IAS 26	퇴직급여 (퇴직연금)
IAS 29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재무보고
IAS 33	주당순이익
IAS 36	자산의 감액
IAS 37	충당금/우발부채 및 우발이익

IAS 39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
--------	--------------

IFRS와 베트남 기업회계제도의 중요한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FRS와 베트남회계기준의 경우 수익인식, 금융비용자본화, 재고자산, 법인세비용,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수정, 투자자산 및 리스 등 대부분의 규정에 있어 큰 개념상의 차이는 없으나, 회계기준 및 세부 내용상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바, 실제 회계처리에 있어서는 베트남회계규정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사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FRS와 베트남회계규정 상 중요한 차이가 존재하는 일부 내용을 비교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관령 규정	구분	IFRS	Vietnam-GAAP
재무제표의 표시(VAS 21)	재무제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현금흐름표 및 주석	자본변동표 규정 없음
유형자산	표시단위	선택가능	VND 단위표시 명시화, 단, 허가 시 달러화 표시 가능
	계정과목	현금 및 현금등가물 등 각 계정과목을 적절히 사용가능	각 계정과목별 Code부여 - 별도의 보다 상세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 지침을 부여하여 모든 기업이 각 Code에 동일한 회계사건이 회계처리 되어야 함.
	유형자산의 인식	미래의 경제적 효익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가능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금액이 VND 1,000만동 이상
	자산의 분류	구체적인 규정 없음	건물 및 구축물 기계장치 비품 차량운반구 기타 유형자산 임목 등
	상각방법 및 상각율	상각율에 대해 구체적인 규정 제시하지 않음	Decision 206에서 정한 상각율(최대 및 최소 내용연수 범위 제시). 상각방법은 기본적으로 정액

			법이나 예외적으로 당국의 승인하에 정율법 적용가능
무형자산 (VAS 4)	자산의 인식요건	외부취득 영업권/개발비/기타무형자산	동일
	비용인식	내부창출 영업권/창업비/ 개업비/교육훈련비/광고비 등 당기 비용인식	창업비/연구비 등을 당기 비용처리. 다만, 개업 전 광고비, 교육훈련비, 창업비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이 제공되는 경우 3년 기간 내 이연 가능한 한편, 베트남 회계법 시행령 Circular 55에서는 사업개시 비용을 무형자산이 아닌 장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비용화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컴퓨터소프트웨어	구매 시 자산처리하며, 하드웨어는 유형자산처리	기본적으로 베트남도 동일하게 회계 처리함. 소프트웨어일 경우에는 무형자산처리하며, 하드웨어와 동시에 구입하였으나 구분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형자산으로 총액처리
	토지사용권	운용리스처리 (분납할 경우)	베트남회계규정도 동일하게 처리하나, 사용권취득 시 총액 납부한 경우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용연수 동안 상각함.

결국, 베트남 회계규정의 경우 큰 틀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IFRS를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바, 큰 차이가 없으나 경제 사회적인 여건상 일부 내용의 경우 변형된 기업회계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선행연구의 고찰

제1절 이익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 이익관리의 유형

다수의 선행연구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및 사적 목적에 부합하려는 다양하고 자의적인 의도로 회계이익을 조정 또는 수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익관리(earnings management)란, 기업이 인정된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안에서 회계기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⁹⁾ Schipper(1989)는 이익조정을 “어떠한 사적인 이익을 얻을 의도를 가지고 외부에 재무보고를 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것”(…purposeful intervention in the external financial reporting process, with the intent of obtaining some private gain(as opposed to, say, merely facilitating the neutral operation of the process.) 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익관리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결국은 경영자에 귀속될 “사적 의도”에 따라 회계이익에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영자의 “사적 의도”에 초점을 두고 이익관리의 유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관리의 가설을 정리하고 있다.

첫째, 이익유연화가설(income smoothing hypothesis)¹⁰⁾이다. 이 가설은 이익의 변동성이 주가수익률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경영자가 극심하게 높거나 낮은 이익을 안정된(또는 표준화된) 이익흐름으로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DeFond & Park(1997)은 경영자의 이익평준화를 기업의 현재와 미래 성과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현재의 성과가 나쁘고 미래의 성과가 좋을 것으

9) APB 의견서 제22호에 의하면 회계정책이란, 보고실체의 경영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입각하여 재무상태 및 재무상태의 변동, 경영성과 등을 특정 상황에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대체적 회계원칙을 선택·적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최강득 외, 2000). 그러나, 이익조작(earnings manipulation)의 경우 GAAP를 위반하여 이익조정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익관리와 이익조작을 구분하는 실제적·경제적 실익이 없으므로 이 두 개념을 혼용하고 있다.

10) 이익평준화가설로도 번역한다(최관, 1992).

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래의 회계이익 중에서 일부를 현재 시점으로 빌려와 양(+)
 재량적 발생액을 취하지만, 현재의 성과가 좋고 미래의 성과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의 회계이익을 저축하여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음(-)의 재량적 발생액
 을 취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Hunt et al.(1996)은 이익평준화가 주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익평준화 현상이 클수록 주식시장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받음
 을 나타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송인만과 이용호(1997)도 이익평준화 현상의 정보효과
 를 분석하면서 재량적 발생액, 특별이익 및 전기손익수정 손실 등이 이익평준화의 주
 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과 평준화도니 이익에 대하여 주식시장 참여자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송인만·최관(1992)은 회계변경과 이익평준화
 현상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기업들은 회계변경 후의 보고이익이 정상이익 또는
 기대이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Ronen & Sadan(1981), Trueman & Titman(1988), 위
 준복(1988), 황교선(1990), 그리고 이효익·최관(1996) 등의 연구가 있다.

둘째, 경영자보상가설(management compensation hypothesis)이다. 경영자보상가
 설의 전제는 회계수치가 여러 계약관계의 근거가 된다는 실증회계학(positive
 accounting theory)적 사고¹¹⁾에서 이론적 근거를 찾는다. Healy(1985)에 의하면 경영
 자가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으로 성과가 나쁜 경우에는 보상기준의 하한을
 초과하기 위해 이익증가정책을 추구하려는 발생액의 조정이 일어나며, 반대로 성과가
 너무 좋아서 보상기준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감소정책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McNichols & Wilson(1988)은 경영자보상체계의 상·하한
 선과 관련하지 않고 이익이 극심하게 높거나 낮을 때 이익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발생
 액의 조정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이 외에 경영자보상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로는
 Holthausen et al.(1995), Gaver et al.(1995), 나종길(1996)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자본시장과 관련된 동기를 들 수 있다.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재무분석가에 이
 용되어 기업의 주가와 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익을 조정하
 여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거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DeAngelo(1986)는 경

11) 실증회계학은 로체스터(Rochester)학파가 중심이 되어 자본시장에 관한 회계학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려는
 시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경영자가 선택한 회계기법의 동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는 연구분야이다. Watts
 & Zimmerman(1986)은 실증회계이론의 세 가설로 경영자보상가설, 부채계약가설, 정치적비용가설을 설정하
 였다.

영자 매수(management buyout)에 앞서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였다. 경영자는 주식을 매입한 후 기업을 잘 운영하여 비싼 값으로 되팔거나, 기업의 자산이나 공장을 분리하여 매각하고 매각차익을 얻게 된다. 주식매수에 앞서 경영자는 기업의 이익을 하향조정하려는 동기를 가진다. 왜냐하면 기업이익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고, 또한 주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므로, 이익을 하향조정하면 주가가 하락하여 주식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때문이다. DeAngelo는 1973년부터 1982년까지 경영자 매수가 발생한 64개 기업에 대하여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익조정 여부는 총발생액의 차이를 재량적 발생액으로 보고 경영자 매수 전에 재량적 발생액이 하락하는지를 검증하였다. 그러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영자 매수 전에 경영자에 의한 이익조정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Perry & Williams(1994)는 DeAngelo(1986)의 연구가 표본기업의 수(64개)가 너무 적고 이익조정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경영자 매수 전의 이익조정 여부를 재 연구하였다. 그들은 1981년부터 1988년까지 175개의 경영자 매수 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익조정 여부의 검증은 Jones(1991)모형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한 후 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다르게 재량적 발생액이 모두 음(-)으로 나타나서 경영자 매수 전에 기업의 이익이 하향조정됨을 나타내었다.

Erickson & Wang(1999)은 피합병회사를 인수하는 대가로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하는 합병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합병직전에 합병회사가 이익을 상향조정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합병기업은 자신의 주가가 높을수록 더 적은 수의 주식을 교부하고도 피합병회사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높일 목적으로 합병직전에 이익을 상향조정할 동기를 가진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합병직전 4분기에 합병기업이 이익을 상향조정함이 관찰되었다. 추가분석에 따르면 합병기업의 전체 주식 중에서 피합병기업에 교부하는 주식의 비중이 클수록 이익의 상향조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발행과 관련된 이익조정 연구는 다시 신규상장기업의 경우와 유상증자기업의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신규상장기업의 경우, 아직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가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신주발행가액의 결정에 기업의 회계정보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규상장기업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발행가격이 높을수록 기업에 유입되는 현금이 많아지기 때문이 이익을 상향조정하여 발행가격을 높이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

Teoh et al.(1998)은 상장과 상장후의 기간을 모두 분석대상으로 삼고 이익조정 여부를 연구하였는데 상장연도에 이익을 증가시키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결과는 이익조정을 행하는 시기가 발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연도가 아니라 상장연도라는 점이다.

최관·백원선(1999)은 유상증자기업을 대상으로 유상증자 2년 전부터 2년 후까지의 이익조정 여부를 분석하였는데, 여러 가지 모형에 의하여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이 모두 유상증자연도까지 증가하다가 유상증자연도에 최대치가 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어 기업들이 유상증자연도에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추가분석에서 유상증자연도에 이익을 상향조정한 기업일수록 유상증자 직후 연도에 순이익이 더욱 하락함을 보인다.

넷째, 경영권지배구조가설(management buyout hypothesis)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영자가 경영권을 보호하려는 유인으로 필요한 경우 회계이익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이다. DeAngelo(1986)는 상장기업의 경영자가 주식을 매수하여 기업을 사적 소유화하는 시기에 당해 기업의 보고이익을 어떻게 조절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그는 1973 - 1982년 사이에 경영권 매수를 행한 64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본기업의 경영자들이 경영권 매수 이전 연도의 이익을 체계적으로 과소계상 할 것이며, 이러한 과소 계상은 총 발생의 체계적인 감액으로 적절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 바, 이 가설은 기각되어 지지되지 못하였다. 이 외에 Perry & Williams(1994), 정규연(1992)의 연구가 있다.

다섯째, 정치적 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으로써 이익관리를 설명하는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가설은 기업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익관리를 한다는 가설로 정부의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또는 정부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이익을 감소시키는 회계정책을 구사한다고 주장한다. Jones(1991)는 관세를 인상하고 물량을 감축하는데 수입제한으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국제무역기구(ITC)에 의한 수입제한조사 기간 중 이익조정을 통해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가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는 수입제한 조사기간 중에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생 항목을 이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였다. 결국 이 가설은 정치적으로 표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예: 세무조사, 방송매체를 통한 공개)을 회피하거나 이해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려는 유인이 작용되어 이익조정을 행한다는 관점이

다. Cahan(1992)은 독점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사받은 48개 기업의 이익조정을 연구하였다. 정부는 반독점규정 위반을 심사할 때 회계이익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독점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독점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은 기업들은 독점판정을 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실제로 검사를 받는 기간 동안에 이익을 하향조정함으로써 나타났다. Key(1999)도 케이블TV(cable TV)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케이블 요금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여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고 사회적 불만이 고조되어 국회가 케이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을 조사할 때 경영자가 이익조정을 행하였는지를 연구하였는데, 조사 기간 동안 이들 기업이 이익을 하향조정함을 밝혔다. J이들 선행연구는 앞선 언급된 실증회계이론의 정치적 비용가설을 지지하는 연구들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법인세 감소유인으로 이익관리를 행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기업은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최소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경영자들은 기업의 보고이익을 회계기간 간에 큰 변동성 없이 유지시키려고 한다. 만약 당해 회계기간에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하면 법인세가 증가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하향조정할 여유가 있으면 과세표준을 감소시키게 된다. 반대로 과세표준이 크게 하락하면 이를 그대로 보고할 경우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과소 납부하려는 의도를 가진 기업으로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을 어느 정도 상향조정시킬 동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정규언(1993)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법인세 납부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동기를 분석하였는데, 법인세의 변동이 순이익의 변동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이 이익유연화 이외에 법인세유연화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춘래·김성민(1995)은 1991년도에 최저한세제도가 시행될 때 기업들의 세무조정 행태를 연구하였다. 최저한세제도는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기업들로 하여금 일정수준까지만 조세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기업들이 최저한세 시행전 연도에 조세감면항목을 많이 계상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103개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최저한세 시행전 연도의 1990년에는 조세감면항목을 많이 계상하여 연구자들의 예상과 달리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있었으나, 1991년도 세무조정시에는 예상과 달리 감면항목과 금액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1991년도에 최저한 세를 납부한 기업들은 비납부기업보다 1992

년 세무조정시보다 더 감면을 줄이고 있었으며, 세무담을 줄이는 세무조정시 일시적 차이 항목보다는 영구적 차이 항목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연구자들은 기업의 이러한 세무조정 행태가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줄이는 세무조정 행태의 예라고 주장하였다.

백원선·최관(1999)은 법인세최소화 동기와 이익조정 의 관계를 보다 일반화시켜서 연구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채계약 위반이나 정치적 표적이 됨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기업의 특성과 관련되는 동기에 따라 이익을 조정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액이 달라지게 된다. 특히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기업들이 이를 감수하면서 기업특성 또는 계약관련 동기만을 고려하여 이익조정을 할 것인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기업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라면 계약 관련 동기에 따른 이익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법인세 추가부담이라는 비용을 동시에 평가하여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박종일·김경호(2002)는 법인세 절감을 경영상의 다른 여러 가지 조건과 연결시켜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경영자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면 법인세 부담이 증가하고,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하여 회계이익을 낮게 보고하면 자본시장에 악재를 작용하여 기업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경영자는 기업의 보고이익을 결정할 때 이러한 재무보고와 세무보고상의 상충관계에 자주 직면하게 된다. 이때 경영자의 가장 좋은 전략은 회계이익을 높게 보고하고 과세소득은 낮게 보고하는 전략이다. 저자들은 경영자가 재무 및 세무보고 의사결정에서 회계이익 최적화와 세금 절감의 이중목적 달성을 위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과 조세혜택을 이용한 세금절감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면 과세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있고, 조세혜택을 잘 이용하면 이익의 증가 없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할 것이며, 세금절감을 하는 방법으로는 조세혜택을 사용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저자들의 예측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영자가 재무 및 세무보고 의사결정에서 회계이익의 최적화와 세금절감의 이중목적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량발생액과 조세혜택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기업의 이해와 경영자의 효용에 부합하는 특정상황에서 여러 행태의 이익 관리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익관리는 경영자의 사적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해줌으로써 기업가치에 관하여 경영자와 정보이용자간에 존재하는 정보 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을 해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Nagy et al. 1999, 송인만·이용호, 1997 등). 그러나, 경영자가 외부에서 식별 불가능한 재량권을 이용하여 자신 또는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이익조정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 측면이 강하다(Lev & Zarowin 1999). 즉 투자자는 기업의 보고 이익을 기업 성과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량적으로 보고되는 회계이익은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실추시키고 주주의 부에 불리한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Feltham & Pae(2000)는 경영자의 이익조절이 그들의 사적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증진시키지만, 이익조절이 경영자의 사적정보와 회계이익의 관계를 왜곡하는 노이즈(noise)를 제공하면 비기대이익(unexpected earnings)의 분산을 증대시키고 따라서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는 감소한다고 하였다.

2. 이익관리의 대상과 이익관리 추정에 관한 연구¹²⁾

<표 3-1> 이익관리의 선행연구

Panel A. Aggregate accruals models	
연구자	재량적 발생액
Healy(1985)	총발생액
DeAnelo(1986)	총발생액의 변동(랜덤워크 가정)
Jones(1991)	매출변동 및 유형자산에 대한 총발생액의 회귀잔차
Dechow et al.(1995)	현금매출변동 및 유형자산에 대한 총발생액의 회귀잔차
Kang & Sivaramakrishnan(1995)	비현금성 유동자산에서 부채를 차감, 수익·비용·유형자산 등의 증가를 조정한 회귀잔차
Yoon & Miller(2002)	총발생액에서 현금수익변동, 현금비용변동, 비유동발생 항목을 차감

12) 이에 관하여 김문태(2004)의 연구를 참조·발췌하였다.

Panel B. Specific accruals models	
연구자	재량적 발생액
McNichols & Wilson(1988)	기초에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 (residual)
Petroni(1992)	손실적립금의 추정오류(claim loss reserve estimation error)
Beaver & Engel(1996)	은행의 미회수 대출금에 대한 대출손실충당금의 잔차 (residual allowance for loan losses)
Beneish(1997)	매출채권회수 기간, 한계성장 지표, 자산의 질에 대한 지표, 감가상각 지표, 판매 및 일반관리비 지표, 총자산에 대한 총발생액 지표
Beaver & McNichols(1998)	자산손실 적립금에 대한 일년간의 시계열 상관
Panel C. Frequency distribution approach	
연구자	이익관리의 검증
Burgastahler & Dichev(1997)	0을 기준으로 검증한 연간 이익실현의 분포의 이상치
Degeorge et al.(1999)	0을 기준으로 검증한 분기 이익실현의 분포의 이상치
Myers & Skinner(1996)	연속적인 이익증가의 수치가 이익관리가 없을 때 보다 더 크다

이익관리에 대한 검증의 기본은 경영자의 재량권을 측정하는 것이며, 선행 연구에서는 연구자별로 고유한 모형을 설계하고 적용하여 이익관리 현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왔다. <표 3-1>는 이 세 가지 접근법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금까지 이익관리 연구에서 진행되어 온 동향은 1) 대용변수(proxy)를 추정하고 2) 개별사건에 적용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를 좀 더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 발생액 연구(aggregate accruals studies)를 들 수 있다. 이는 발생항목

전체를 하나로 통합하고 총발생액과 설명변수 사이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규명하려는 접근법이다. 예컨대, Healy(1985)는 평균발생을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여기고 총발생액에서 이를 차감하여 재량적 발생액으로 설정하여 경영자보상과 이익관리 행태를 연구하였다.

둘째, 개별 발생액 연구(specific accruals studies)이다. 이 연구는 여러 발생항목 중 하나의 항목만을 선택하여 경영자의 재량성이 개입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접근법이다. 예를 들어, McNichols & Wilson(1988)은 부실채권에 대한 비재량적 대손설정액을 기초대손총당금과 두 개 연도의 대손상각비를 이용하여 추정한 후, 이를 실제 대손설정액에서 차감하고 재량적 대손설정액(즉 보고된 대손총당금과 GAAP에 따른 측정기간의 차이를 재량적 발생이라고 정의하였다)을 구하여 이익관리 현상을 연구하였다. 즉 대손설정액이라는 개별 발생항목의 재량성 여부를 이익관리 변수로 파악하였다. 특정 개별 항목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예를 들면, 이연법인세를 통한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관리(Phillips et al., 2003; 전규안·박종일, 2002)나 감사인 지정과 관련(박한순, 1996)하여 개별발생액을 통한 연구가 있다. 또 윤순석(1997)은 특별상 각 기업이 현금흐름효과 때문에 추가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김문철·황인태(1996)는 당해 연도 이익이 기대이익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에는 전기손익수정항목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크게 하는 반면, 당기 이익이 기대이익보다 훨씬 상회하는 경우에는 전기손익수정항목을 이용하여 보고이익을 낮추려고 하지 않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셋째, 분포접근법(frequency distribution approach)이다. 이 방법은 재량적 이익관리 항목을 측정하지 않고 재무제표에 보고된 순이익과 순이익변동의 횡단분포를 이용하여 이익관리 현상을 연구하는 접근법이다. Burgstahler & Dichev(1997)은 이익감소가 작을 때에 손쉬운 이익조정이 상대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였다. 연구 결과, 순이익변동의 분포도 상으로 순이익의 변동이 불변인 범위 근처에서 순이익 변동의 감소보다 순이익 변동의 증가가 많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근소하게 손실로 변동이 발생하면 순이익의 변동방향으로 근소한 이익조정을 행하는 것을 산포도로 보여주었다.

제2절 보고이익 수치의 비정상적 분포에 관한 연구¹³⁾

숫자의 기대빈도는 직관적으로 균등하게 관찰될 것으로 기대하기 쉽지만, 숫자가 인 지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러하지는 않고, 오히려 특정자리에 특정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기록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첫째자리 숫자는 실제 측정 등가(equal value) 이상의 대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보고자의 의도에 따라 조정된 금액으로 기록될 수 있다.

선행연구자들은 자리숫자의 비정상적 빈도에 호기심을 갖고, 이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왔다.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Newcomb(1881)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그는 두꺼운 대수학 교재의 앞부분이 뒷부분보다 더 더럽다(grimier)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과학자들이 높은 수보다는 낮은 수를 살펴보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자릿수 특성은 Benford(1938)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그는 다양한 분야의 자료- 강 유역 면적, 야구 통계수치, 원소의 무게, 잡지 기사에 나타난 숫자 등-에서 20,229개의 관측치를 무작위로(randomly) 수집하여, 특정 숫자가 특정 자리(단위)에서 강조된다는 대수적 법칙(logarithmic law)을 제시하였다.¹⁴⁾

Benford's law는 회계부정(accounting fraud)이나 데이터의 위조(fabrication)를 탐색하는 기법으로도 활용되었다. Carlsaw(1988)는 1981년부터 1985년까지 4년간 뉴질랜드의 220개 이익보고(손실기업 제외) 기업을 대상으로, 이익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보고되는지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대빈도와 달리 둘째자리에는 0에 가까운 숫자의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9에 가까운 숫자의 빈도는 낮게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결과가 경영자의 목표달성지향성(goal achieving behavior)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Thomas(1989)는 Carlsaw (1988)의 연구를 확장하여, 미국기업을 대상으로 손실기업과 분기이익 및 주당순이익(EPS; earnings per share)을 포함하여 동일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손실을 보고한 기업은 0의 빈도가 낮고 9의 빈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분기이익 자료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주당순이익은 이익수

13) 김문태·위준복(2007)의 연구를 참조하여 기술하였다.

14) Benford's law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의 연구결과는 특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제시된 '첫째자리 숫자'에서 매우 타당한 것으로 증명되어, 숫자의 비정상성이 내포하는 오류를 탐색하는데 크게 공헌하였다(Drake and Nigrini, 2000). 재무분야에서도 Ley(1996)은 Dow Jones 산업평균지수와 S&P Index 등 주식시장의 수치들이 Benford's law에 매우 근접하는 것을 보였다.

치 자체보다 더 빈번한 절상(round up)을 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Das & Zhang(2003)는 Carlaw(1988)와 Thomas(1989)의 연구를 더욱 확장하였다. 이들은 운전자본 발생액이 높은 기업의 경영자가 재무분석가의 예측, 이익보고(positive profits), 최근 이익(recent performance)에 부합하기 위하여 보고된 EPS를 round up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Nigrini(1996)은 납세자에 의하여 보고된 소득수치와 탈세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탈세를 목적으로 소득수치를 조작한다면, 특정 자리숫자의 기대빈도가 정상적인 Benford's law를 이탈할 것으로 간주하였다. 분석결과, 첫째자리에 낮은 수가 관측되는 빈도가 Benford's law의 기대빈도를 초과하였으며, 소득수치가 하향으로 조작되었음이 밝혀졌다.

국내의 연구로, 정규연(1991)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보고이익 올림조정행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나라 상장기업에서 첫 번째 자리수를 크게 보이기 위하여 두 번째 이익수치의 올림조정행위를 관측하였으며, 썸 단위에 있어서도 억 단위를 크게 보이기 위하여 천만 단위에서 올림조정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위준복(1995)은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등록 기업까지 표본을 확대하여 당기순이익을 대상으로 그 비정상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상장기업이나 등록기업 모두에서 순이익의 과시효과를 부각하기 위하여, 둘째 자리를 첫째 자리로 절상한 결과 둘째 자리에 0의 관찰빈도가 많고 9의 관측빈도가 적은 것을 보여 정규연(1991)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한편, 윤재원(2000)은 분포 및 빈도분석을 통하여 결손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Burgstahler & Dichev(1997)의 결과가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하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이에 관한 국내의 최근 연구로 김문태·위준복(2007)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경영자가 영업성과의 대표치인 순이익의 첫째자리 숫자를 높게 보고함으로써, 자신의 실적을 호의적으로 평가받고자 하기 때문에, 둘째자리 이익수치를 첫째자리로 절상(round-up)할 유인을 갖는다고 전제하였다. 이들은 이익을 보고한 집단의 둘째자리에 낮은 숫자(0, 1, 2)의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많고, 높은 숫자(7, 8, 9)의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적은지를 살펴보았다. 반면에 손실을 보고한 집단은 이러한 인위적 절상행위를 실행하지 않는 결과 둘째자리에 높은 숫자의 빈도가 더 많게 나타나도록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가 이익의 상향조정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재

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둘째자리 숫자의 비정상적 빈도는 실제 관측빈도에서 기대빈도의 차이로 검증하였으며, 이때 기대빈도는 Benford's law와 균일 분포로 예측하였다. 또한 재량적 발생액은 수정 Jones 모형으로 추정하였으며 1995년부터 2003년까지의 2,951개 연도-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보고 기업은 둘째자리 이익수치에 낮은 숫자(0, 1, 2)의 관측 빈도가 기대치보다 유의하게 높은 반면, 높은 숫자(7, 8, 9)는 기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손실보고 기업은 이익보고 기업과 정반대로 둘째자리 이익수치에 낮은 숫자가 기대보다 덜 발생되었으며, 높은 숫자는 기대보다 더 많이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둘째 자리 숫자의 비정상성은 높은 이익을 보고하기 위한 경영자의 의도적인 조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낮은 둘째자리 숫자(0, 1, 2)는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한 양(+)의 설명력을 보였다. 낮은 둘째자리 숫자와 이익의 상향조정 간의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는 이익의 상향보고를 위해 둘째자리 이익수치를 첫째자리로 절상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의 설계

본 연구는 베트남 기업의 순이익을 높게 보고하고자 하는 행동의 존재가능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써, 보고이익의 둘째자리에 오는 0, 1, 2 등 낮은 자리숫자가 비정상적 발생빈도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보편적인 추론으로, 보고이익 수치가 조작되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둘째자리에 위치하는 숫자는 1/10의 확률로 기록될 것이며, 선행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보고이익 수치는 경험적으로 최소한 Benford's law를 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경영자가 첫째자리 숫자를 크게 보이게 위하여 이익보고 이전에 둘째자리의 높은 숫자를 절상(round up)하는 이익조정을 행사하였다면, 둘째자리 숫자에 낮은 숫자가 올 가능성이 커진다. 가령, ₩99억을 ₩100억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둘째 자리수 9를 절상하는 조정을 행한다면, 첫째자리 숫자는 1이 되지만 둘째자리 숫자는 0이 되는 이치와 같다. 따라서 이익수치의 둘째자리에 오는 0, 1, 2 등 낮은 숫자가 1/10의 기대확률 또는 Benford's law의 확률에서 이탈된 정도가 크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면, 보고이익의 수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김문태·위준복, 2007).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이익의 상향조정만 의도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법인세 절감정책으로 이익을 감소하는 전략이 구현될 수 있다(박춘래·김성민, 1995; 백원선·최관, 1999; 박종일·김경호, 2002; 위준복·김문태, 2005). 특히, 위준복·김문태(2005)는 재무보고비용과 세무보고비용이라는 상충된 상황에서 경영자가 “법인세 부담의 정도”에 따라 보고이익을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종속변수인 이익조정 변수로 재량적 발생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이연법인세부채 등을 설정하였으며 설명변수로는 법인세부담을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과 기타 통제변수 등을 활용하였다. 유효법인세율은 재무보고이익에 세무조정이 가미된 사업보고서의 법인세부담액을 활용함으로써 실제 조세부담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표본기업 747개를 대상으로 선형회귀모형과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은 재량적 발생

액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1%의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두 분석모형 모두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선형회귀분석에서 법인세부담이 높을 때 이연 법인세부채가 유의하게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법인세부담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조정을 이용하여 이익의 하향을 유도하고 또한 보고이익을 감소시켜 과세소득과의 차이를 축소시키는 전략을 구사한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기업의 경우, Tax Incentive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가령, 2004년 이전에 설립된 섬유 봉제업종의 경우, 80% 이상 수출하는 조건으로 하여 10%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동안 적용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4년간 완전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의 Tax Incentive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내수원 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한 Tax Incentive는 폐지되었었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 그 Tax Incentive 는 잔여기간 동안 받을 수 있다. 첫째, 최초 투자허가서를 받을 당시의 법률에 의거하여, 내수 원재료 사용 비율 또는 수출 비율과 관련된 조건 이외에 다른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 는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 공단내 회사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전 사업기간 동안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2년간 완전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의 혜택을 받으므로, 잔여기간 동안에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베트남의 WTO 가입과 더불어 개정된 법인세법 Decree No.24/2007/ND-CP and Circular No.134/2007/TT-BTC 에 따라 Tax incentive 조건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조건에 해당되는 Tax incentive는 받을 수 있다(산업공단 내 제조업의 경우 15% 우대세율을 12년간 적용 받으며, 최초 과세소득 발생연도로부터 3년간 완전 면제, 이후 7년간 50% 감면의 조건을 받을 수 있음)¹⁵⁾.

15) 가령 2010년 법인세 납부연기 조항은 다음과 같다. Decision No. 12-2010-QD-TTg (2010. 2.12)

- The Law on Management of Tax의 규정에 따라, 매 분기별로 익월 말일까지 신고/납부하던 법인세를 3개월 납부연기를 할 수 있게 되었음
-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 섬유/의류, 가죽의류 및 신발봉제 가공제조업체
- 납부연기 가능한 법인세액의 결정은 다음과 같음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베트남 기업의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이다. 베트남 정부는 1999년 제정된 최저임금을 6년 만인 2006년 1월6일 시 행령을 공포해 상향조정했다. 이 시행령은 2006년 2월1일부터 발효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99년 대비 25% 상승), 실질임금 인상률(99년 대비 35% 상승), 국영기업 최저임금 인상률(99년 대비 39% 상승)을 반영했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설명이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08년 1월28일 베트남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계획안(20-KL/TW)을 다시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12년까지 베트남기업과 외자기업의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한다는 베트남 정부의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2012년까지 베트남기업은 매년 20~38% 수준으로 그리고 외자기업은 매년 13~15% 비율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했다. 2009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이러한 계획을 따르고 있다. 매년 최저임금이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임금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세계경제 불황으로 임금인상률이 주춤하기 전까지 베트남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7%를 기록했다. 그런데 현지 기업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생산직 근로자의 실제 임금인상률은 평균 20~30%에 이르렀다.

화이트칼라 임금인상률도 이에 뒤지지 않았다. 2004년과 2005년의 평균 임금인상률은 8%대였는데, 2006년에는 11% 이 상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경제를 분석한 여러 보고서는 2008년까지 고급인력 공급이 수요의 30~40%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고급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장임금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베트남 산업이 고도화하면서 불거진 재무.회계.마케팅 분야의 인력확보 경쟁이 빚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금융과 서비스 분야에서 고급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다¹⁶⁾.

- 중소기업(SMEs)의 경우, 매 분기별 예정법인세액 및 2010년 최종 법인세액

○ 법인세 납부연기기간

- 2010년 1/4분기 법인세: 2010년 7월 20일 까지
- 2010년 2/4분기 법인세: 2010년 10월 30일 까지
- 2010년 3/4분기 법인세: 2011년 1월 31일 까지
- 2010년 4/4분기 법인세: 2011년 4월 30일 까지
- 2010년 최종확정법인세: 2011년 6월 30일 까지

○ 상기 사항은 새로 개정된 Circular 39/2010/TT-BTC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범위, 적용대상 업종의 수의 및 신고절차 등을 기술하고 있으니 각 업체에서는 동 규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음

출처: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에서 요약

본 연구는 베트남 기업들이 조세감면과 법인세 인하대상 기업으로 선정받을 때까지 이익실현과 이익보고를 지연(defer)하는 이익감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제한다. 또한 이익성과에 의하여 종업원들과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영자들이 이익을 축소하여 보고할 유인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베트남 기업의 순이익 둘째자리의 낮은 숫자는 발생액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

제2절 가설 검증모형의 설계

$$ACC = a_0 + a_1SD + a_2SIZE + a_3DEBT + a_4ROA + \epsilon \quad \text{식(1)}$$

$$SD = a_0 + a_1ACC + a_2SIZE + a_3DEBT + a_4ROA + \epsilon \quad \text{식(2)}$$

<변수의 정의>

- 1) ACC: 당기순이익에서 현금흐름 부분을 차감한 총발생액,
- 2) SD: 순이익수치의 둘째자리수가 0,1,2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3)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 총자산이익률

* 주) 모든 변수는 임의의 기업과 t기간에 해당하는 아래첨자는 기술편의상 생략함.

종속변수인 ACC는 경영자가 보고하는 순이익에서 이익조정에 활용하기 힘든 현금흐름을 제외한 총발생액으로써 이익조정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측정하는 대용변수(proxy)이다. 주 설명변수 SD은 둘째자리 순이익 수치(second digit earning numbers)가 0, 1, 2 등 낮은 숫자이면 1의 더미변수를, 나머지 숫자는 0의 더미변수를 부여하였다. 이익수치의 둘째자리 숫자는 영업성과의 대표치인 첫째자리 숫자를 높여 보고하려는 의도로 절상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세무전략을 위하여 이익을 하

16) 출처: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국제노동협력원), <http://www.koilaf.org>, 국가별 노동정보

향조정 할 의도가 대입될 수도 있다. 따라서 둘째자리 숫자가 낮은 자리 숫자로 기록되었다면, 이 수치가 ‘절상조정’되고 난 이후 숫자인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반대의 전략이라면 SD가 ACC에 음(-)의 영향을 보일 것이다. 가설의 논리 종합하면, SD는 ACC에 음(-)의 부호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식(2)의 종속변수는 0, 1, 2 등 낮은 둘째자리 순이익 수치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며, 이익조정이 궁극적으로 낮은 둘째자리 숫자로 표시되는 확률유의성을 포착하는 모형이다. 보고이익의 수치는 다양한 회계선택을 망라한 결과이며,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베트남 기업의 이익하향 전략을 예상한다면 주설명변수 ACC와 종속변수 SD의 설명관계는 음(-)으로 예상된다.

SD와 ACC의 관련성을 엄밀하게 고려하려면, 부채수준, 기업규모, 영업성과 등 주요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DEBT는 총부채를 총자산으로 표준화하여 측정하였다.¹⁷⁾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DEBT와 총발생액이 양(+)의 설명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다¹⁸⁾. SIZE는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기업규모 변수로써 Watts and Zimmerman(1986)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이익조정을 행함을 언급하였다¹⁹⁾. 마지막으로 ROA는 총자본(산)이익률로 전반적인 성과지표를 나타낸다.

제3절 표본선정

본 연구의 표본은 베트남 증권시장 68호 (<http://www.cophieu68.com>)에서 추출하였다. 베트남 주식시장은 호치민 증권거래소(www.hsx.vn)와 하노이 증권거래소(www.hastc.org.vn)에 개장되어 있으며, 2006년 195개, 2007년 248개 기업(호치민 136개, 하노이 112개), 2008년 266개 기업(호치민 145개, 하노이 121개)이 거래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재무자료 입수 가능한 414개 기업-연도표본을 횡단면 자료(cross-sectional data)로 구성하여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17) 만일 총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측정하면 자본이 잠식된 기업의 경우 음(-)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총부채에 비해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은 부채비율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다(윤순석, 2001).

18) 외국과는 달리 한국의 경우 부채비율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 대체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보고하였다(윤순석, 2001; 박종일, 2003).

19) 한국의 연구에서 최성규와 김경민(2001)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재량적발생액의 절대값이 더 작다고 한 반면, 박중성과 이은철(2003)은 DA와 기업규모사이에 유의한 양(+))을 보고하여 기업규모가 클수록 이익을 상향조정함을 암시하여 일관된 결론을 얻기 힘들다.

제4절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표4-1> 기술통계량 (n=41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4(25%)	중위수	3/4(75%)	최대값
ACC	0.342	0.652	-2.772	0.017	0.242	0.611	4.330
SD	0.359	0.480	0.000	0.000	0.000	1.000	1.000
SIZE	19.371	1.438	15.936	18.473	19.409	20.208	23.103
DEBT	0.445	0.212	0.041	0.274	0.457	0.591	0.949
ROA	0.120	0.158	-0.239	0.048	0.091	0.148	1.806
CFO	-0.223	0.627	-3.906	-0.511	-0.130	0.075	2.826

<변수의 정의>

- 1) ACC: 당기순이익에서 현금흐름 부분을 차감한 총발생액,
- 2) SD: 순이익수치의 둘째자리수가 0,1,2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3)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 총자산이익률, CFO: 현금흐름

<표4-1>은 연구에 활용된 414개 표본의 주요변수 기술통계량을 보이고 있다. ACC는 발생항목으로 영업성과인 이익 중 상대적으로 이익조정이 용이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ACC의 평균은 0.342로 나타난 바, 대체적으로 0에 근접한 값을 갖는 여타의 연구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보고된 현금흐름은 매우 불량한 것을 보인다. 이는 베트남 기업들이 성과를 보고할 때, 진실된 현금흐름을 보고하지 않거나 발생항목을 통하여 지나치게 전반적으로 이익의 상향조정을 심하게 구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통제변수에서 주목할 점은, 부채비율의 평균(중위수)이 0.445(0.474)로 한국의 윤순석(2001, p. 72)의 0.698(0.729)에 비하여 낮게 관측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본시장 완전개방 이후 부채비율에 대한 요건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ROA의 평균은 0.120으로 총자산에 대한 수익성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관분석

<표 4-2> 주요 변수의 상관분석 (n=414)

	ACC	CFO	SD	SIZE	DEBT	ROA
ACC	1.000					
CFO	-0.970	1.000				
SD	-0.128	0.093	1.000			
SIZE	0.052	-0.083	0.059	1.000		
DEBT	0.057	-0.118	0.174	0.177	1.000	
ROA	0.281	-0.041	-0.162	-0.115	-0.235	1.000

<변수의 정의>

- 1) ACC: 당기순이익에서 현금흐름 부분을 차감한 총발생액,
- 2) SD: 순이익수치의 둘째자리수가 0,1,2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3)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 총자산이익률, CFO: 현금흐름

<표 4-2>는 주요변수에 대한 Pearson 상관계수를 나타낸다. 우선, ACC와 CFO는 순이익의 두 구성요소로써 산술 구조상 매우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반면 ACC와 ROA는 매우 강한 양(+)의 상관성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 중요한 ACC와 SD의 상관관계는, 보고이익의 낮은 둘째 자리 숫자가 이익의 상향조정과 관련이 크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매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 기업이 보고하는 이익의 둘째 자리가 0, 1, 2 등 낮은 숫자일지라도 발생항목을 통한 이익조정과는 무관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이익보고 이전에 둘째 자리에 7, 8, 9 등 높은 숫자를 첫째 자리로 ‘올림(round-up)’하는 이익조정을 구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일

정 수준의 이익보고를 억제, 회피, 이연할 의도로 이익의 하향조정을 꾀하고, 그 결과 ACC와 SD가 유의한 음(-)의 설명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 SD와 DEBT는 1% 유의수준에서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SD와 ROA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바, 총자산이익이 높을수록 낮은 둘째 자리 숫자가 오지 않을 설명관계를 유추하게 한다.

3. 평균차이분석

<표 4-3> 평균차이분석 (n=414)

	SD=0(266)		SD=1(148)		t 통계량	p 값
	평균	표준편차				
ACC	0.405	0.614	0.231	0.705	2.508	0.013
SIZE	19.308	1.399	19.485	1.502	-1.170	0.243
DEBT	0.418	0.208	0.495	0.210	-3.561	0.000
ROA	0.139	0.179	0.085	0.103	3.820	0.000
CFO	-0.266	0.585	-0.145	0.690	-1.793	0.074

<변수의 정의>

- 1) ACC: 당기순이익에서 현금흐름 부분을 차감한 총발생액,
- 2) SD: 순이익수치의 둘째자리수가 0,1,2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3)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 총자산이익률, CFO: 현금흐름

<표 4-3>은 보고이익의 둘째 자리 숫자가 낮은 0, 1, 2 집단(SD=1)과 그렇지 않는 집단(SD=0)의 주요변수 평균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SD=0인 집단의 ACC 평균은 0.405인데 반하여 SD=1인 집단에서 ACC 평균은 0.231로, 후자가 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더 낮았다. 이는 베트남 기업의 보고이익 둘째 자리 숫자가 낮을 때, 총발생액이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이익의 하향조정을 암시한다. 또한, SD=0과 SD=1에서 DEBT의 평균은 각각 0.418, 0.495로 보고이익 둘째 자리 숫자가 낮은 집단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OA의 평균은 각각 0.139, 0.085로

둘째 자리 숫자가 낮은 집단의 수익성이 유의적으로 더 낮게 나타났다.

지금까지 평균차이분석을 요약하면, 둘째 자리 숫자가 낮은 집단은 수익성이 낮고, 부채비율이 높으며, 총발생액이 더 낮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총발생액과 낮은 둘째 자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베트남 기업이 이익의 상향조정을 강행하지는 않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익 상향보고의 억제, 이익의 이연 등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설정 논리를 더욱 명확하게 뒷받침해주었다. 그러나 위 차이분석은 집단분류 차이결과만을 제시하므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통하여 각 성과변수의 상대적 설명력을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4. 회귀분석

<표 4-4> 다중회귀분석

패널 A 전체표본

	선형회귀분석			로짓분석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표준 오차	WALD 통계량	p값	EXP(B)
(상수)		-1.303	0.193	-1.678	1.493	1.263	0.261	0.187
SD	-0.106	-2.218	0.027					
ACC				-0.414	0.188	4.849	0.028	0.661
SIZE	0.069	1.443	0.150	0.041	0.076	0.288	0.591	1.042
DEBT	0.135	2.729	0.007	1.481	0.544	7.403	0.007	4.398
ROA	0.303	6.224	0.000	-2.300	1.095	4.410	0.036	0.100
수정R-Sq.(F)	0.101	12.532	0.000	χ^2		26.930	0.000	

패널 B 2006년

	선형회귀분석			로짓분석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표준 오차	WALD 통계량	p값	EXP(B)
(상수)		-2.203	0.030	-3.906	3.027	1.665	0.197	0.020
SD	-0.185	-1.817	0.072					
ACC				-0.519	0.304	2.904	0.088	0.595
SIZE	0.280	2.778	0.007	0.177	0.156	1.284	0.257	1.193
DEBT	-0.101	-0.928	0.356	1.255	1.168	1.156	0.282	3.508
ROA	-0.087	-0.808	0.421	-4.937	2.868	2.962	0.085	0.007
수정R-Sq.(F)	0.069	2.802	0.030	χ^2		12.993	0.011	

패널 C 2007년

	선형회귀분석			로짓분석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표준 오차	WALD 통계량	p값	EXP(B)
(상수)		0.744	0.459	2.948	3.175	0.862	0.353	19.062
SD	-0.120	-1.226	0.223					
ACC				-0.547	0.443	1.526	0.217	0.579
SIZE	-0.064	-0.659	0.511	-0.154	0.162	0.913	0.339	0.857
DEBT	0.150	1.472	0.144	0.055	1.089	0.003	0.960	1.057
ROA	0.274	2.600	0.011	-3.947	2.379	2.753	0.097	0.019
수정R-Sq.(F)	0.066	2.817	0.029	χ^2		6.872	0.143	

패널 D 2008년

	선형회귀분석			로짓분석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표준 오차	WALD 통계량	p값	EXP(B)
(상수)		-0.082	0.934	-3.672	2.945	1.555	0.212	0.025
SD	-0.009	-0.095	0.925					
ACC				-0.032	0.367	0.008	0.930	0.968
SIZE	0.011	0.111	0.912	0.145	0.152	0.912	0.340	1.156
DEBT	0.208	2.161	0.033	0.760	1.021	0.553	0.457	2.137
ROA	0.252	2.652	0.009	-0.665	1.316	0.256	0.613	0.514
수정R-Sq.(F)	0.066	2.830	0.029	χ^2		2.107	0.716	

패널 E 2009년

	선형회귀분석			로짓분석				
	회귀 계수	t 통계량	p값	추정 계수	표준 오차	WALD 통계량	p값	EXP(B)
(상수)		0.007	0.994	0.875	3.582	0.060	0.807	2.399
SD	-0.155	-1.804	0.074					
ACC				-1.140	0.629	3.287	0.070	0.320
SIZE	-0.019	-0.226	0.822	-0.133	0.179	0.550	0.458	0.876
DEBT	0.279	3.134	0.002	3.715	1.317	7.960	0.005	41.072
ROA	0.585	6.878	0.000	-3.595	3.118	1.329	0.249	0.027
수정R-Sq.(F)	0.342	14.143	0.000	χ^2		19.330	0.001	

<변수의 정의>

- 1) ACC: 당기순이익에서 현금흐름 부분을 차감한 총발생액,
- 2) SD: 순이익수치의 둘째자리수가 0,1,2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 3) SIZE: 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 DEBT: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ROA: 총자산이익률, CFO: 현금흐름

<표 4>는 가설의 검증모형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수정R²에 대한 F값이 유의하여 모형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분산확대지수(VIF: variance inflation factor)를 통하여 검토한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는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짓분석의 모형 역시 대체적으로 적합하여 결과 해석의 타당성을 제공한다.

선형회귀분석에서, 종속변수인 ACC는 경영자가 보고하는 순이익에서 이익조정에 활용하기 힘든 현금흐름을 제외한 총발생액으로써 이익조정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측정하는 대용변수(proxy)이다. 주 설명변수 SD은 둘째자리 순이익 수치(second digit earning numbers)가 0, 1, 2 등 낮은 숫자이면 1의 더미변수를, 나머지 숫자는 0의 더미변수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주 설명변수 SD가 ACC에 유의한 음(-)의 설명계수를 보인다면 “베트남 기업의 순이익 둘째자리의 낮은 숫자는 발생액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가설은 지지될 것이다.

또한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0, 1, 2 등 낮은 둘째자리 순이익 수치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익조정이 궁극적으로 낮은 둘째자리 숫자로 표시되는 확률유의성을 포착하는 모형이다.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의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 선형회귀분석을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패널 A는 연구에 활용된 표본 414개 전체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SD의 회귀계수는 -0.106, t 통계량은 -2.218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설명관계를 보였다. 이는 보고이익의 둘째 자리 숫자가 0, 1, 2 등 낮은 값이면 총발생액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익의 상향조정 억제, 혹은 이익의 하향조정을 암시한다. 베트남 기업의 경우, Tax Incentive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경영자는 이러한 세무전략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당기의 이익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수익을 이연시키는 회계선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패널 B, 패널 C, 패널 D, 그리고 패널 E는 전체 표본을 각각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으로 연도 세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주 변수 SD의 회귀계수는 각각 -0.185, -0.120, -0.095, -0.155로 2007년과 2008년은 유의하지 않는 음(-), 2006년과 2009년에는 10%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이익 상향조정

억제와 이익의 하향조정을 암시한다.

실제로 2008년에 호치민시 세무국에 제출된 FDI 기업 2000사의 회계 보고 중 50% 이상은 영업 성적이 적자였다. 베트남은 경제발전을 위해서 FDI 기업에 대해서 다양한 우선 제도를 적용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업들은 세금 감면이 적용되거나 특정 분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특별한 과세 조치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많은 FDI 기업은 적극적으로 활동해 베트남 경제발전에 공헌하고 다수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한편, 법률의 「빠져 나갈 허점」을 이용해 납세를 피하기 위해, 영업 성적을 「적자」로 보고하는 케이스도 있다. “적자” 보고 기업 중에서도 실제로는 이익이 많다. 2008년의 회계 보고에 대해 호치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0사 중 1000사 이상이 “적자”로 보고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은 전체의 52%를 차지한다. 이와 같이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10년간으로는 FDI 기업 2730사중 1300사가 재정 보고도 “연속해 적자”라고 기재되고 있지만, 그 활동 규모는 확대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에서는 Tan Tao 공업단지에 있는 섬유 회사는 매년 「적자」로 보고하고 있는데 매상은 100 배 증가 하고 있다(1998년의 매상이 1300억 VND →2007년의 매상이 9조VND). 같은 시기에 있어 Sai Gon 2, Sai Gon 3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섬유 회사 각사는 “흑자”계상이었다. 호치민 세무국은 회계 보고서로 “적자”라고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그 데이터를 분석해 필요에 따라서 추가 납세를 요구한다고 하고 있다. 호치민 시세무국 차장에 의하면, 다수의 FDI 기업은 경쟁 격화, 수입 경비 증가라는 이유로 “적자”가 되는 상황을 설명으로 하고 있다.

실제로는 이러한 기업은 수입에 드는 경비의 상승 이외에 외국 투자에 대한 우대 정책을 이용해 광고 경비나 마케팅 경비를 합리적인 경비 항목에 산입하여 실제의 매상을 낮게 계상하고 있다. 그 외, 베트남에서는 기업에 대한 수익세는 2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세율이 다른 아시아 주변국보다 높기 때문에 외국 기업은 모회사에의 이익 전가를 도모한다.

그 결과,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는 적자계상이 되는 한편, 외국에 있는 모회사가 흑자가 된다고 하는 구도가 성립한다. 이러한 연속적 적자보고 기업의 대부분은 아시아에 거점을 두는 기업이다. 그 중에서도 많은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섬유, 피혁, 의류, 소프트웨어 등이며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기업들 중 한국이나 대만의 기업이 많다²⁰⁾.

통제변수에서 DEBT는 ACC에 유의한 양(+)²⁰⁾의 설명력을 보인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익의 하향조정을 의도한 베트남 기업이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발생항목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패널 A의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로짓분석에서, ACC의 추정계수는 -0.414로 wald 통계량은 4.849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설명관계를 보였다. 이는 발생항목이 낮을수록 궁극적으로 낮은 둘째자리 숫자에 포착될 확률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고, 가설을 지지하였다.

제5장 연구의 결론 및 한계점

본 연구는 베트남 기업의 보고이익 둘째 자리 숫자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의도를 반영하는지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회계이익의 첫째자리 수는 회계정보이용자의 기준연상점(reference point)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영자는 첫째자리 이익숫자를 크게 보고하려는 유인이 강하다. 그러나 그 첫째자리 숫자가 어떠한 기준숫자로 결정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본 연구는 낮은 둘째자리 숫자가 첫째자리 숫자를 절상하는데 활용되었는지 총발생액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베트남 기업들이 조세감면과 법인세 인하대상 기업으로 선정받을 때까지 이익실현과 이익 보고를 지연(defer)하는 이익감소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제한다. 또한 성과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부담을 회피하고자 경영자들이 이익을 축소하여 보고할 유인을 고려하여, “베트남 기업의 순이익 둘째자리의 낮은 숫자는 발생액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베트남 증권시장 68호(<http://www.cophieu68.com>)에서 추출한 상장법인 414개 연도-기업 표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 출처: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vn_news/46299

첫째, 상관분석결과, 보고이익의 낮은 둘째 자리 숫자가 이익의 상향조정과 관련이 크다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매우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베트남 기업이 보고하는 이익의 둘째 자리가 0, 1, 2 등 낮은 숫자일지라도 발생항목을 통한 이익조정과는 무관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이익보고 이전에 둘째 자리에 7, 8, 9 등 높은 숫자를 첫째 자리로 ‘올림(round-up)’하는 이익조정을 구사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일정 수준의 이익보고를 억제, 회피, 이연할 의도로 이익의 하향조정을 꾀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둘째, 평균차이분석에서, 베트남 기업의 보고이익 둘째 자리 숫자가 0, 1, 2 등으로 낮을 때, 총발생액이 유의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 이익의 하향조정을 암시하였다. 즉 총발생액과 낮은 둘째 자리와의 관계를 통하여 베트남 기업이 이익의 상향조정을 강행하지는 않는 것을 유추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익 상향보고의 억제, 이익의 이연 등 보수주의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선형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통하여, 보고이익의 둘째 자리 숫자가 0, 1, 2 등 낮은 값이면 총발생액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 기업의 경우, Tax Incentive가 달리 적용되는 복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하거나, 이월 시키거나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세무전략 효과를 얻기 위하여 당기의 이익을 축소하여 보고하거나 수익을 이연시키는 회계선택을 취하는 것으로 유추된다. 로짓분석에서도 발생항목이 낮을수록 궁극적으로 낮은 둘째 자리 숫자에 포착될 확률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선형회귀분석의 결과와 유사하고, 가설을 지지하였다.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 신흥국가로 급부상 하고 있는 베트남 기업의 이익보고 행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향후 연구는 베트남 기업의 세무자료와 임금자료를 입수하여, 본 연구에서 밝힌 사실들이 과연 이익의 하향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하기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참고 문헌>

- 김문태.2004. 외국인 지분참여가 이익관리의 크기와 방향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 연구. 제22권 4호. 85-111.
- 김문철·황인태.1996. 전기수정항목을 통한 이익조정행위에 대한연구: 이익유연화를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1권 4호: 123-142.
- 김성철.2009. 베트남 대외경제 개방 연구: 북한에 주는 함의. 통일연구원.
- 나종일.1996. 이익조작에 대한 경영자보상가설과 이익유연화가설의 비교. 회계학연구. 제 21권 4호: 47-66
- 나종길·최관.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1호: 1-32.
- 박한순.1996. 감사인지정이 경영자의 이익조절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1권 3호: 33-61.
- 박종성·이은철.2003. 회계제도의 개선과 회계정보의 유용성. 회계학연구 제28권 2호: 105-134.
- 박종일.2003. 기업지배구조와 이익조정: 최대주주 지분율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 28권 2호: 135-172.
- 박종일·김경호.2000. 세금비용과 이익조정이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7권 2호: 81-115.
- 백원선·최관.1999. 이익조정과 법인세 최소화 동기. 회계학연구 제24권 1호: 115-139.
- 백춘래·김성민. 1995. 최저한세 시행전후 기업등의 세무조정형태. 회계학연구 제20권 4호: 79-97.
- 송인만·이용호.1997. 이익유연화현상과 정보효과: 투자자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회계학연구 제 27권 1호: 63-92.
- 위준복.1995. 순이익 수치의 비정상성. 산업경제연구 제18집: 1-19.
- 위준복·김문태.2005, 순이익 수치의 비정상 분포를 통한 이익관리의 고찰, 회계학연구 제32권 1호: 33-58.
- 윤순석.1997. 특별상각에 대한 시장반응. 회계학연구 제22권 4호: 1-21.
- 윤순석.2001.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이익관리에 대한 비교 연구. 증권학회지 제29호: 57-85.
- 윤재원.2000. 결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과 무납부회피를 위한 법인세조정에 관한 연

- 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효익·최관. 1996. 기업의 이익조정에 대한 윤리적 수용가능성. 회계학연구 제 10권: 21-44.
- 전규안·박종일. 2002. 순이연법인세 변동액과 이익조정에 관한연구. 한국학연구 제15권 4-240.
- 정규언. 1991. 보고이익의 올림조정행위. 경영연구 제25권 1호: 94-107.
- 정규언. 1992. 경영자변경과 이익유연행위. 회계학연구 제14권: 27-48
- 정규언. 1993. 법인세 유연화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16권
- 조군제. 2009. 베트남의 기업회계와 조세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회계연구 제27집, 269-295.
- 최성규·김경민. 2001.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경영자의 이익조절. 회계학연구 제26권1호: 153-175.
- 황교선. 1990. 경영자의 기간이익유연화 경향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10권: 63-88

<국외 참고 문헌>

- Bartov, E. F. Gul. and J. Tsui. 2000. Discretionary-Accruals Models and Audit Qualif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0 (3): 421-452.
- Benford, F. 1938. The law of anomalous number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78: 551-572.
- Berton, L. 1995. He's Got their Number. Scholar Uses Math to Foil Financial Fraud. *Wall Street Journal*, July 10.
- Burgstahler, D. and I. Dichev. 1997. Earnings Management to Avoid Earnings Decreases and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December): 99-126.
- Cahan, S. 1992. The Effect of Antitrust Investigations on Discretionary Accruals: A Refined Test of the Political Cost Hypothesis. *The Accounting Review* 67: 77-95
- Carslaw, C. 1988. Anomalies in income numbers: evidence of goal oriented behavior. *The Accounting Review* 63 (April): 321-327.
- Das, S. and H. Zhang. 2003. Rounding-up in reported EPS, behavioral thresholds,

- and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5: 31–50.
- DeAngele, L. 1986 Accounting Number as market Valuation Substitutes: A study of Management Buy-outs of Public stockholders. *The Accounting Review*. 400–420
- Dechow, P. M., R. G. Sloan. and A. P.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April): 193–225.
- Defond, M. L. and J. Jiambalvo. 1994. Debt Covenant Violation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January): 145–176.
- Drake. P. and M. J. Nigrini 2000. Computer assisted analytical procedures using Benford' s Law. *Journal of Accounting Education* 18: 127–146.
- Feltham, G. A. and J. Pae. 2000. Analysis of the impact of Accounting of Political Economy, Vol.88. No2, pp.288–307
- Fleiss, J. L. Statistical method for rates and propositions, 2nd Edition(Wiley, 1981): 13.
- Gaber, A. and C. W. J. Ganger. 1966. Prices as Indicator of Quality: Report on an inquiry, *Econometrica* 33: 43–70.
- Guay, W. R., S. P. Kothari. and R. L. Watts. 1996. A market-based evaluation of discretionary accrual mode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 (Supplement): 83–105.
- Healy, P. 1985. The Effect of Bonus Schemes on Accoun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7: 85–107.
- Holthausen, R. D. Larcker and R. Sloan. 1995. Annual Bonus Schemes and the Manipulation of Earning,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9(February): 29–74.
- Hunt, S. E. Moyer and T. Shevlin. 1996. Earnings volatility, earnings management, and equity valu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WA (1996) Working paper.
- Jones, J. 1991. Earnings Management during Import Relief Investigat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9: 193–228.
- Key, K. G. 1997. Political Cost Incentives for Earnings Managements in Cable Television Industr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3(3): 309–337.
- Ley, E. 1996. On the peculiar distribution of the U.S. stock indices digit. *American Statistician* 50: 311–313.
- Lev, B. and P. Zarowin. 1999. The Boundaries of Financial Reporting and How to

- Extend The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Autumn): 353-385
- McNichols, M. and G. P. Wilson. 1988. Evidence of earnings management from the provision for bad debt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6 (Supplement): 1-31.
- Menon, K. and D. Williams. 2004. Former Audit Partners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9(4): 1095-1118.
- Merle Erickson and Shiing-wu Wang. 1999. "Earnings Management by Acquiring Firms in Stock for Stock Merger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49-76
- Nagy, A, K. Norris, and R. Riley. 1999. Managerial Horizons, Accounting Choices and Informativeness of Earning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Tennessee.
- Newcomb, S. 1881. Note on the frequency of the use of digits in natural numbers. *American Journal of Mathematics* 4: 39-40.
- Nigrini, M. 1996. A Taxpayer Compliance Application of Benford's Law,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8(1): 92-91.
- Nigrini, M. 1999. I' ve got your number: How a mathematical phenomenon can help CPAs uncover fraud and other irregularities. *Journal of Accountancy* (May): 79-83.
- Perry and Williams. 1994. Earnings Management Preceding Management Buyout offer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57-179
- Phillips, J, M. Pincus, and S. Rego, Earnings Management: New Evidence Based on Deferred Tax Expense, *The Accounting Review*, 2003, pp.491-521.
- Raimi, R. 1976. The first digit problem.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83, (August-September): 521-538.
- Rosch, E. 1975. Cognitive Representations of Semantic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04: 192-233.
- Schipper, K. 1989. Commentary on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Horizons* 3 (December): 91-102.
- Subramanyam, B. 1996.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August-December): 249-281
- Teoh, S., I. Welch and T. Wong, 1998, Earnings management and the underperformance of seasoned equity offering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50: 63-99
- Thomas, J. K. 1989. Unusual Patterns in Reported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64(October): 773-787.

Trueman, B. and S. Titman. 1988. An Explanation of Accounting Income Smoothing.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6(Supplement): 127-139

Watts R. L. and J. L.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Web Site>

http://www.vinahanin.com/vn_news/46299

<http://www.deloitte.com/>

<http://www.cophieu68.com>)

<http://www.koilaf.org>,

<http://blog.daum.net/jeri1960/17297613>